

# 2022년 (사)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 빅블러(Big Blur) 시대와 신탁산업

2022. 12. 16.(금) 13:30~18:00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 홀

주  
후

최 |  
원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예탁결제원



truefriend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 2022년 (사)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대주제 : 빅블러(Big Blur) 시대와 신탁산업

- 일 시 : 2022. 12. 16.(금) 13:30~18:00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 홀
- 주 최 : (사)한국신탁학회

## 【제1부】

진행 : 이준민 교수(총무이사, 전남대)

13:30~13:45	등 록
13:45~13:50	개 회 사 : 안성포 교수(한국신탁학회 회장)
13:50~14:00	축 사 : 오창석 회장(무궁화신탁) 이명호 사장(한국예탁결제원)
14:00~14:40	기조강연 : 금융환경변화와 신탁산업 감독방향 - 권혁세(前 금융감독원장)
14:40~14:50	기념사진 촬영

## 【제2부】

진행 : 김태진 교수(연구이사, 고려대)

구 분	사 회	주 제	발 표	토 론
1 주제 15:00 ~16:00	맹수석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디지털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활성화	남궁주현 교수 (성균관대)	서애리 변호사(한국예탁결제원)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2 주제 16:00 ~17:00	김병연 교수 (건국대)	빅블러시대와 커스터디언 기능의 발전방향	이효경 교수 (충남대)	권용수 교수(건국대)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3 주제 17:00 ~18:00	노혁준 교수 (서울대)	소수점 주식거래 관련 제문제 -신탁법리를 중심으로-	김태진 교수 (고려대)	김진원 서기관(법무부 상사법무과) 조응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신탁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계학술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탁학회 회장 안성포 교수입니다.

오늘 동계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빅블러(Big Blur) 시대와 신탁산업”입니다. 빅블러는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 등 업종간, 산업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시대로의 전환은 빅블러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어떤 종류의 권리가 표시되는지에 따라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오로지 신탁업자가 오로지 금전신탁에 한하여 수익증권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기능별 규제와 업종별 규제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업자 아닌 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거래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조각투자 사업자인 카사, 루센트블록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자본시장법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와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설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한시적인 것으로, 자본시장법은 새로운 투자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제도권 내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수익증권의 발행범위를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도 허용하고, 아울러 수탁자를 신탁업자로 한정하지 않는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빅블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신탁산업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관하여, 남궁주현 교수님께서 “디지털수익증권발행의 활성화”, 이효경 교수님께서 “빅블러시대와 커스터디언 기능의 발전방향” 그리고 김태진 교수님께서 “소수점 주식거래 관련 제문제-신탁법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십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 분 교수님들의 주제 발표에 앞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님의 “금융환경 변화와 신탁산업 감독방향” 에 관한 기조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신탁이론과 신탁실무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신탁학회의 모토와도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신 권혁세 원장님께서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후원을 해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님과 박철영 전무님,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이국형 대표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류전철 교수님,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직접 우리 학회를 찾아 주신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탁학회 회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으로 올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해 학회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동계학술대회를 통하여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사)한국신탁학회 회장 안 성 포

## ❖ 목 차 ❖

기조강연	금융환경변화와 신탁산업 감독방향	3
	■ 강 연 : 권혁세 (前 금융감독원장)	
제1주제	디지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성화	15
	■ 사회자 : 맹수석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 발표자 : 남궁주현 교수 (성균관대)	
	■ 토론자 : 서애리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제2주제	빅블러시대와 커스터디언 기능의 발전방향	41
	■ 사회자 : 김병연 교수 (건국대)	
	■ 발표자 : 이효경 교수 (충남대)	
	■ 토론자 : 권용수 교수 (건국대) 임정하 교수 (서울시립대)	
제3주제	소수점 주식거래 관련 제문제 - 신탁법리를 중심으로 -	63
	■ 사회자 : 노혁준 교수 (서울대)	
	■ 발표자 : 김태진 교수 (고려대)	
	■ 토론자 : 김진원 서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웅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2022년 (사)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빅블러(Big Blur) 시대와 신탁산업

---

기 조 강 연

---

금융환경변화와 신탁산업 감독방향

강 연 : 권혁세 (前 금융감독원장)



# 금융환경 변화와 신타산업 감독방향

2022. 12. 16.

권혁세

## 목차

1. 신타산업 현황
2. 금융환경변화와 신타산업발전의 필요성
3. 신타산업발전을 위한 감독정책방향

# 1. 신탁산업 현황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를 포함한 자산이전까지 가능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서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노후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사회로 일찍(2009년)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을 다음세대로 효과적으로 이전하기위해 정부주도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 \*제도개혁을 통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추진

※신탁제도개혁의 주요내용

- 신탁의 수탁가능 재산범위 제한 철폐
- 재신탁설정 등 신탁업자의 자율적 자산운용 허용
- 상속·증여세법 등 신탁관련 세제개선을 통해 세대간 자산이전 조기 촉진

## 1. 신탁산업 현황

일본의 경우 제도개혁이후 신탁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1년 수탁고가 1천조엔을 돌파한 이후 10년만인 2022년 3월말 현재 수탁고가 1525조엔에 달하는 등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금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처분하는 포괄신탁이 전체 신탁자산의 53%를 점유할 만큼 신탁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음.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2009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2022. 3월말 기준으로 누적계약건수가 20만건에 달하고 치매고령자증가로 이들을 위한 후견제도지원신탁을 2012년에 도입하였음.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육아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장애인신탁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복지관련 신탁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시장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대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양적·질적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었음

## 1. 신탁산업 현황

- 2021년 말 기준 국내 신탁시장규모는 1166조원으로 일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
- GDP 대비 신탁수탁고(% , 2020 기준)를 비교하더라도 일본 (173%), 한국(53%), 미국(94%)
- 신탁상품 구성면에서 볼 때도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함
  - \* 신탁재산별 비중 : 금전신탁(50%), 부동산신탁(35%)
- 이는 신탁을 특정금융상품의 판매 채널로 주로 활용해옴에 따른 결과로 신탁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고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미흡

## 1. 신탁산업 현황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국민재산축적,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선진국처럼 신탁이 다양한 연령대별, 자산규모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역할 증대가 요구되지만 국내 신탁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신탁이 금융상품 판매 채널로 주로 활용되면서 비금전 재산에 특화된 전문업자가 부재
- 신탁 재산의 유동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
  - ※ 현재 부동산, 저작권 등을 기초로 신탁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서비스를 금융당국이 혁신 서비스로 지정
- 기업승계·후견·치매·복지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지원할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미 발달

### 1. 신탁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신탁업법 전면개정 후 2012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신탁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음.

금년들어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길 희망.

- 2012년 : 개정 신탁법 반영한 자본시장 개정안 국회 제출
  - 자기 신탁 설정
  - 신탁 재산 범위 확대(채무, 담보권)
  - 모든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 증권 반영 허용
- 2017년 : 금융위·법무부·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신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진입 기준 완화
  - 인가 단위 기능별 전환
  - 종합 재산 신탁 업무처리 기준 마련
  - 신탁재산 범위 확대(부채, 영업, 담보권 등)
  - 자기 신탁, 수익 증권 신탁 사채 발행 등 운용 자율화
  - 재신탁 허용
  - 광고 규제 완화

## 2. 금융환경변화와 신탁산업 발전의 필요성

-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개인의 금융자산 축적이 증가하고 신탁 등 다양한 자산관리 수단에 대한 needs가 증가
  - GNI, GDP가 증가할수록 신탁재산은 0.52의 상관계수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 및 경제규모 고려 시 신탁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큼
-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많은데도 금전신탁 위주로 신탁이 발전함에 따라 가계가 신탁을 외면하는 요인이 됨
  - 일본처럼 종합재산신탁과 재신탁이 활성화되면 신탁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2. 금융환경변화와 신탁산업 발전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자본시장으로 시중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ICT발달 등으로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관심 증대
- 최근 소비자보호문제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신탁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
- 저작권·미술품 등 다양한 재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발행 등 조각투자서비스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관심 증대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노후 대비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미흡한 수준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가 2022년 17.5%로 세계평균 9.8%보다 두 배 가량 높음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205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7.1%로, 2070년에는 46.4%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예상
  - ※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 진입(2009년) 3-4년 전에 신탁 제도 개혁 추진

## 2. 금융환경변화와 신탁산업 발전의 필요성

- 많은 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 고령자들의 노후자산관리에 대한 니즈 확대
  - 2021년 기준 국내전체가구 순자산에서 60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41.1%
  - 순자산 상위 1% 가구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이 63.7% 점유
  -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증가하면 상속 및 증여, 치매노인지원, 가업상속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등 각종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수요 증대 예상
  - 코로나19 이후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사망률은 오히려 증대해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고 높은 노인빈곤율 등 사회적 양극화도 확대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신탁\*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결혼육아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장애인신탁, 가업승계신탁, 치매신탁, 유연대용신탁, 펫 신탁 등

###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 □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 신탁업혁신방안을 발표

- 기본방향은 투자수단으로서의 신탁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all-in-one case)하는 신탁본연기능 활성화에 둠
- 2017년 금융위 주관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마련한 신탁제도 개선안이 주요 골격을 이룸

####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 □ 주요내용

##### (1) 종합재산관리기능강화

##### ● **취급재산 다양화**

- 시장수요가 큰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가능재산에 포함
  - \* 현재 자본시장법 103조에 신탁가능재산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 열거
- 취급재산다양화가 이루어질 경우 고객재산 상황이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 가능



●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화·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병원, 회계·세무법인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서비스가 가능토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자본법 규정 정비
  - \* 현행 자본법 업무위탁규정 (§42)은 신탁법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본질적 업무위탁 시 진입요건이 높은 신탁업 인가가 필요해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 곤란
- (기대효과) 신탁업자가 다양한 재산을 수탁 받고 이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 강화
  - <예>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 유언대용신탁전문기관
  - 특허권 관리활용에 전문성 있는 특허법인 → 지식재산권신탁전문기관
  - 치매노인돌봄·요양에 특화된 의료법인·병원 → 치매요양신탁전문기관

(2)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 (신탁수익증권제도화)

●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제를 정비

- \* 현재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제도활용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수익증권발행을 허용하면서 유사 기구와의 동일 규제를 통해 투자자보호
  - \* 현재 저작권 등 5개 조각투자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여 수익증권 발행 예외 허용
- ① 발행: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재산종류, 발행자, 재산구성, 발행한도, 증권신고서 등 규제체계정비
  - ① 판매: 판매처를 인가하고 행위·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① 운용: 펀드관련 규율을 준용한 정보제공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차익발생방지 위한 운용규제 장치 도입
- (기대효과) 유동화법 등 기존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지원  
특히, 조각투자, 주식소수점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기반마련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출연지원

- 가업승계신탁, 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가입허용, 복지신탁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탁상품 출연 지원

- 가업승계신탁: 중소 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관련 제도를 정비
- 주택연금: 주택이 고령층 주요재산인점을 감안해, 주택연금가입요건 충족시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제도 정비
- 복지신탁: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 신탁 활성화 → 관계기관 협의 필요

- (기대효과) 중소 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및 신탁된 주택활용도 제고, 후견·장애인 신탁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4) 소비자 보호관련 규율정비

- 행위원칙강화, 신탁보수규율, 종합재산신탁규율정비, 홍보규율,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추진

□ 금융위의 신탁업혁신방안이 향후 법제화될경우 국내 신탁산업이 양과 질면에서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 금융위의 신탁업혁신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향후 국내신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① 고령화시대에 사회복지증대와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신탁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바, 일본처럼 신탁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지원이 필요

- 다양한 목적을 가진 신탁상품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신탁세제를 수익자 친화적으로 세분화 필요
- 신탁산업의 글로벌화를 감안하여 신탁세제의 국제적 적합성도 확보

② 개인을 중심으로 신탁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 필요

- 일본처럼 운용형, 관리형 신탁 등 다양한 스몰라이선스제 도입
- 신탁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탁대리점 도입 등 신탁판매채널 활성화 필요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③ 부동산 신탁업 역할 제고 및 리스크 감독 강화

-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
- 이는 신탁본연기능인 자산관리보다 개발신탁이나 담보신탁에 치중하기 때문임

⇒ 고령화시대의 개인의 노후자산관리기관으로서 역할 미흡

\*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전체 신탁수탁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14개 전업부동산 신탁사가 수탁고의 80%를 점유하며 수익성이 높은 분양, 토지, 처분 신탁을 거의 독점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③부동산 신탁업 역할 제고 및 리스크 감독 강화

- 이러한 사업구조 편중화로 부동산경기 악화 및 금리상승기에 부동산 전업사들의 리스크 증대
    - 과거 외환위기 당시 CP등 단기자금조달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일부 전업 부동산신탁사 도산
    - 전업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지난 수년간 부동산경기호황을 틈타 지방 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을 확대
    - 최근 금리상승과 부동산경기악화로 인한 미분양증대, 레고랜드발 PF시장 자금경색등으로 리스크 증대
- ⇒ 리스크분산을 위한 사업구조 다양화 추진 필요

3.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감독 정책방향

③부동산 신탁업 역할 제고 및 리스크 감독 강화

- 앞으로 개인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One Stop Service 제공이 가능토록 신탁플랫폼 도입 추진 필요
  - 현재는 분업화된 신탁업구조하에 고객은 상품에 따라 여러 신탁회사를 접촉하고 계약
  - 플랫폼을 도입하면 고객은 1개 신탁사(플랫폼)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는 분야별로 전문신탁사에 재신탁을 해 고객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능
  - 신탁플랫폼은 고객관리에 치중하고 관리·운영은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최종책임은 플랫폼이 담당